

992. 6.17

본, 53년 '불법행위 배상' 표명 신대등 피해 정부 청구 가능

한-일회담 대표 구보타 발언록 확인

교회담 과정에서 일본
대한 불법행위가 드
배상할 의사가 있음을
당시 한-일 회의를
무부에 의해 공개되던
중군위안부) 등 일제
에 대한 정부 차원의
청구 가능성이 새롭게
다. <관련기사 3면>
이날 "일본은 전쟁중
에서 약탈한 것이나
등에 대해 배상을 하
2나 일본이 한국에서
한 사실이 없다고 본
다면 배상할 것이다"
53년 10월13일 한-
회담 제2차 본회의(일
에서의 구보타 간이지

로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록을 공
개했다. 이 회의록은 회담 직후
작성돼 현재까지 외무부에 보관
돼 왔으나 대외비로 분류돼 공개
되지 않았다.
그러나 외무부는 김용식 전 외
무장관이 이날 <동아일보>와의
회견에서 이 회의록을 근거로 "배
상문제를 일본에 새롭게 제기해
야 할 것"이라고 주장함으로써
공개를 결정했다.
53년 당시 주일공사로 한-일
교섭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였던
김 전 장관은 "한-일 국교정상화
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
3억달러, 유상원조 2억달러는 주
로 '원상회복'문제를 논의한 한-
일 회담 과정을 종합해 역수를

정했을 뿐 배상문제는 전혀 거론
되지 않았다"며 정신대문제 등
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
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
다. 정부는 한-일 회담 때 일제
가 한국에서 빼앗아간 금괴와 채
권 등의 원상회복에만 초점을 두
고 이른바 '대일청구권 8개 항목'
을 요구했을 뿐 정신대 등의 문
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.
외무부는 이 회의록의 공개와
관련해 "이 기록을 근거로 대일
청구권을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
무리다"라며 기존의 정부 방침을
재확인했다.
정부는 지금까지 대일 청구권
문제는 65년의 한-일 청구권협정
으로 일단락됐기 때문에 새로운
청구권문제 제기할 수 없다는
자세를 보이고 있다.

라는 것이다. 그렇지 않아도 아
회폐가는 한-일관계에 정신대를
문제삼아 점잖지 않은 문제로 일
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좋지
않다는 외교적 고려 때문이다.
아무튼 이렇게 동떨어진 외부
부 담당부서의 현실판단과 정책
방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
는 피해 당사자의 주장과 국민들
의 여론에 달렸다고 하겠다.
<박종문 기자>

정부는 현재 정신대 문제와 관
련해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
며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.
그러면서도 법적 대응문제에
있어서만큼은 전혀 적극성을 보
이지 않고, 오히려 법무부 등의
대일 배상청구 권의 등을 묵살하
고 있다.
실태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공
개하면 일본이 일어서 해줄 것이
있다.
정부는 현재 정신대 문제와 관
련해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
며 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.
그러면서도 법적 대응문제에
있어서만큼은 전혀 적극성을 보
이지 않고, 오히려 법무부 등의
대일 배상청구 권의 등을 묵살하
고 있다.
실태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공
개하면 일본이 일어서 해줄 것이
있다.

한일협정 정부 저자세 새삼 입증 단국선 "재론불가능" 미온적 반응

1992. 6.17
— 공개된 '구보타 배상발언'의 의미 —

"일제의 한국인에 대한 불법행
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배상을 하
겠다"는 구보타 일본측 대표의
53년 한-일회담 회의록이 16일
공개되면서 이러한 자료가 정신
대 등에 대한 대일 배상 청구의
근거가 된다는 주장을 놓고 외부
부 내부에서조차 평가가 크게 엇
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
다. 외무부의 담당부서인 이주국
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한-일 국
교협정의 진행경위와 65년의 한-
일청구권협정 조항을 들어 전혀
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.
김석우 이주국장은 16일 "53년
한-일 제3차 회담은 일본 수석대
표인 구보타의 발언으로 사실상
중단돼 일본의 불법행위 문제는
58년에 제개된 회담에서 대이상
주의제가 되지 못했으며, 청구권
협정 2조 1항으로 한-일 청구권
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
된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러
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"고 말

했지만, 51년부터 65년까지 1~7차례
 걸쳐 진행됐던 한-일교섭회담에
서 단지 53년도 당시의 회담내용
만을 떼어내 논의를 한다는 것은
회담의 전체 흐름을 무시한 무리
한 주장이라는 것이다.
김 국장은 또 51년 제1차 한-
일회담 당시 한국 정부가 제시한
8개 항목의 대일청구권요강과 65
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
록을 들어 대일본 청구권의 재론
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
다. 대일 청구권 요강 8개 항목
에서 정부가 애초부터 중군위안
부 등 정신대 문제를 일제 피해
의 사례로서 제시하지도 않았으
며, 합의의사록에서도 이를 그대
로 확인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배
상청구권을 새롭게 제기한다는
것은 어렵다는 것이다.

김 국장은 다만, 이러한 형식
상의 논리에도 불구하고 정신대
문제가 한-일 국교정상에서 다뤄
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논란
의 여지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.
그러나 외무부의 국제법 전문
가들은 이주국의 논리가 매우 공
격하다고 반박한다.
일본이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
하겠다고 회담과정에서 공언했
다는 회의록이 있다면, 이는 대일
청구권 제기를 법적으로 보강해
주는 적절한 자료가 된다는 주장
이다.
이러한 회의록이 없을 경우라
도 정신대 등의 불법행위는 중대
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용해서
도 청구권의 대상으로 거론할 수
있는데, 청구권을 약속한 회의록
을 보편하고 있으면서도 정부가
우물쭈물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
가 없다는 것이다.
외무부의 한 전문가는 "일반적
으로 국제회의의 회의록은 조약의
해석과 효력의 다름에 있어서 매
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"며 "구
보타의 발언록은 65년 청구권 협
정의 해석과 효력에 직접 영향을
끼친다"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.
이와 함께 회계의 전문가들도

